

인권 존중의 학교 문화 만들기

학생인권옹호관이 지원합니다.

학생인권은?

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입니다.
 경기도학생 인권조례는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,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 자유, 교육에 관한 권리,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, 양심·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, 자치 및 참여의 권리, 복지에 관한 권리,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,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,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학생인권옹호관은?

학생인권옹호관은 정당한 이유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학생인권이 침해되는 경우 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,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.
 이에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침해 신청 사안에 관하여 상담을 진행하고, 사안을 조사합니다.
 그 결과 학생인권침해로 판단되는 경우 인권보호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합니다.

‘학생인권’ 누구나 상담할 수 있습니다

<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26조 >

-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.

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

- 전화 상담 : 031-820-0637 (매주 월~금 9시-18시)
 - 방문 상담 :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3층 학생인권센터
 - 이메일상담 : cay27@goe.go.kr
- 경기학생 인권의 광장(<https://edup.goe.go.kr/shr/shrMain/main.do>)

